



제417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전기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신설〉

■ 김용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1154호)

2024. 8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전 문 위 원 곽 현 준

목 차

□ 김용민의원 대표발의(제2201154호)	1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4
1. 전기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신설 (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)	4

□ 김용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1154호)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김용민의원 등 13인
2. 제 안 일 : 2024. 6. 28.
3. 회 부 일 : 2024. 7. 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급 및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음. 더군다나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전기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 신설(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)

가. 개정안의 내용

개정안은 전기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를 신설하고, 전문기관에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,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이륜차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50조의2(전기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등) ① 전기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이륜자동차의 전기·전자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전기·전자장치 정기검사(이하 “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”라 한다)를 받아야 한다.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전기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. ③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방법, 검사항목,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 제84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19. (생략) <u><신설></u> 20. ~ 24. (생략) ⑤·⑥ (생략)	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제50조의3(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업무의 대행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제84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~ 19. (현행과 같음) 19의2.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. ~ 24. (현행과 같음) ⑤·⑥ (현행과 같음)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나. 검토의견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¹⁾에 따라 자동차는 정기검사, 튜닝검사, 임시검사 등의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, 현재 이륜자동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²⁾되어 있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있지 않음.³⁾

1) 「자동차관리법」

제43조(자동차검사) ① 자동차 소유자(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)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1. 신규검사: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
2. 정기검사: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3. 튜닝검사: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
4. 임시검사: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
5. 수리검사: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(이하 “자동차검사”라 한다)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(이하 “자동차검사기준”이라 한다)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신규검사: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

2. 정기검사·튜닝검사·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: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(猶豫)할 수 있다.

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(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(이하 “정기검사”라 한다)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
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·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·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(造作)·변경하거나 조작·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) 「자동차관리법」

제5조(등록) 자동차(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)는 자동차등록원부(이하 “등록원부”라 한다)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. 다만,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) 환경부에서 내연기관 이륜차만을 대상으로 환경검사(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소음·진동분야 검사)를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 2023년 말 기준 전기이륜차는 68,125대이며, 최근 3년간 36.1% 증가하는 등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.

<연도별 전기이륜차 대수 현황>

(단위: 대, 누적기준)

2021년도	2022년도	2023년도
50,069	63,091	68,125

자료: 국토교통부

특히, 최근 3년간 전기이륜차의 화재현황을 살펴보면, 총 9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연간 약 3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, 재산 피해는 약 2억 2,600만원 수준임.

<최근 3년간 전기이륜차 화재 발생 현황>

구분	화재 건수	인명 피해(명)			재산피해 (천원)
		계	사망	부상	
계	90	3	0	3	225,955
2020	27	0	0	0	129,758
2021	32	3	0	3	64,636
2022	31	0	0	0	31,561

※ 2022년 화재통계 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.

자료: 국토교통부

이에 개정안은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전기이륜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<현행 자동차검사와 개정안의 전기이륜차정기검사 비교>

	구분	현행		개정안
		자동차	이륜자동차	전기이륜차
국토 교통부	신규검사	○	×	×
	정기검사	○	×	○
	튜닝검사	○	×	×
	임시검사	○	×	×
	수리검사	○	×	×
환경부	배출가스 검사	○	○	×
	소음진동 검사	○	○	×

다만, 개정안의 내용을 포괄하여 정기검사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「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」(법률 제19724호, '23. 9. 14.))이 2025년 3월 15일에 시행예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<「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」(법률 제19724호)의 주요내용>

- 가.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, 정기검사, 튜닝검사,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 도입, 검사결과 조치, 검사 연장·유예 및 검사방법 등 규정(안 제51조).
- 나.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검사대행자의 시설·장비 기준 등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51조의2).
- 다.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, 시설·기술인력기준 및 지정절차, 지정 취소 시 지정 제한, 휴·폐업 시 신고사항에 관한 규정(안 제51조의3).
- 라.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 규정(안 제51조의4).
- 마.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, 검사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(안 제51조의5).
- 바.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이륜자동차 검사 관리업무 보고에 관한 규정(안 제72조).

사.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과징금 부과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(안 제74조 및 제76조).

아. 이륜자동차 검사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(안 제79조, 제80조, 제81조, 제82조 및 제84조).

다. 정부 및 관련단체 의견

1) 국토교통부

전기 이륜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,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이륜차 검사제도가 이미 마련되었음.

문 의 처

02)6788-5582